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해('23. 9. 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발의·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 [예]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등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식당·카페·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 적용 대상은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하나의 기업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인접한 장소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중 공사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1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터는 건설공사의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 우리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더라도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 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 방지대책 마련
 -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 구축 및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대기업에 비해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에 역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누구나 쉽게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 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1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 를 통해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지원을 상담 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1명 이상 선임한 2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일부 몰지각한 교육수강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 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사업주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 제4조)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